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“주민생활지원과”신설에 따른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“복지환경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명칭변경(안 제3조)
- “주민생활지원과”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('06.4.5)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 지침
-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-439('06.9.19)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능 강화계획 지침에 의거 과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
 - 사회복지과 업무일부를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임
 - 부칙에 시행일은 2007. 1. 1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 명칭을 일괄 개정하였음